

19.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년 8월 28일
- 발의의원 : 홍인표 · 김재우 · 김지만 · 김혜정 · 배지숙 · 윤기배
이진련 · 이태손 · 전경원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9월 2일
- 상정일자 :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0년 9월 10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홍인표 의원)

□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20. 8. 5.)에 따른 위임 사항 및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 자립 기반 마련, 권익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청년의 권리와 책임(안 제4조)
- 청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청년정책의 연구사업 및 실태조사 수행(안 제7조)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8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제10조)
- 청년 권익증진 등 청년 지원 시책(안 제13조~제16조)
- 청년의 날 취지에 따른 행사·교육 등의 실시(안 제18조)
- 수당 및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안 제19조~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충호)

□ 개정취지

-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 보장, 자립 기반 마련,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적법성 여부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청년,

청년단체, 청년공간을 정의하고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임.

<청년 등의 정의>에 관한 상위법과 조례안 비교>

청년기본법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p>제3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법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 발전과 참여 및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홍보·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임.
- 안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는 법 제5조를 이기한 것으로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
- 안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는 지역 고유의 청년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상위법과 조례안 비교>

청년기본법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p>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취지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광역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p>	<p>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p> <p>①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시책 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6.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7. 청년정책 취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연구 사업과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안 제8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는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책임관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상위법과 조례안 비교>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p>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p> <p>-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p>	<p>제8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p> <p>-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p>

- **안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p>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시장 - 부위원장 : 위촉 위원 중 호선 - 간사 : 청년정책업무 담당 과장 - 당연직 : 일자리투자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창조국장 - 위촉직 : 청년을 2분의 1이상 포함 2. 임기 : 2년, 한 차례 연임 3.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 개최

- **안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상위법과 조례안 비교>

청년기본법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p>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p> <p>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p> <p>제18조(청년 창업지원)</p> <p>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p> <p>제20조(청년 주거지원)</p> <p>제21조(청년 복지증진)</p> <p>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p> <p>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p> <p>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p>	<p>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2. 청년창업지원 3. 청년 능력개발 지원 4. 청년 주거지원 5. 청년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생활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청년 국제협력 지원 9. 청년정책과정에서 청년참여 확대 10. 청년 사회진입 촉진 지원

- 안 제14조(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지원)는 역외 우수 청년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15조(청년공간의 지원)는 청년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한 청년공간의 설치·지정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18조(청년의 날)는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안 제19조(수당 등) 및 안 제20조(포상)는 청년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변상하고, 청년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20. 8. 5.)에 따른 위임사항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 시책 등을 규정하여 청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상위법의 내용을 이기 하고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 취지와 내용 면에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하고 있는 「청년기본법」과 달리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지역별로 당면한 청년 문제의 정도와 차이를 고려한 결과로 법 제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청년의 범위 확대에 따른 한정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 문제, 중앙과 지자체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통일 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조례안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청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이 된 시대에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지방이주 정착지원, 사회진입 촉진지원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구 고유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위법의 기본 취지 및 위임사항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